

원격거래 서비스를 위한 약정서

홍콩상하이은행

지점 앞

본인("고객")은 근거계좌 및 연결계좌(이하에서 정의됨)와 관련하여 고객(또는 그 지정대리인)이 본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의 방법 등으로 은행에 전달하는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은행이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아래의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원격거래 서비스 개요

"원격거래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영업점 방문없이 원격 수단을 이용하여 연결계좌를 개설하거나,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고객은 본 약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 후 개설된 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원격수단을 이용하여 실명확인 절차없이 연결계좌를 개설하거나 자금이체에 관한 거래지시를 은행에 할 수 있고, 은행은 본 약정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 고객의 거래지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본 약정에 의해 생성된 연결계좌 및 근거계좌는 통장을 고객에게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않으며 연결계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근거계좌"라 함은 고객이 은행과 대면하여 개설한 고객 명의의 계좌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실명확인 절차를 마친 계좌를 말한다.
- 2."연결계좌"라 함은 근거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전화, 팩스, 영업점 방문 등을 이용하여 근거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개설한 고객 명의의 계좌로, 근거계좌와 연결된 계좌를 말한다. 연결계좌는 근거계좌의 개설시 또는 근거 계좌의 개설 이후 언제든지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없이 개설할 수 있다.
- 3."운용계좌"라 함은 본 약정과 관계없이 이미 고객명의로 은행에 개설된 예금 계좌를 말한다.
- 4."대면하여"라 함은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이 은행 지점에서 은행직원에게 직접 <별첨1> 원격거래지시서를 제출하거나, 은행 지점이 아닌 장소에서 은행 직원과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 <별첨1> 원격거래지시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5."원격수단"이라 함은 전화, 팩스밀리, 또는 우편 등 위 제4호의 대면으로 하는 방식을 제외한 거래지시 수단을 의미한다.
- 6."은행"이라 함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의미한다.
- 7."회신전화 연락처"(이하 "지정전화번호" 포함)란 은행이 고객의 원격거래 지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의 전화번호로, 본 약정서에 기재된 유선·무선 전화번호를 의미한다. 다만, 본 약정서 체결 이후 고객이 회신전화 연락처를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회신전화 연락처는 그에 따라 변경된다.

제3조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으로부터의 거래지시 조건

고객은 은행에 원격거래지시를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이 적용됨을 동의한다.

- ①고객이 은행에게 대출신청을 하거나 기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질권 및 담보권 설정 등을 하는 행위를 포함)를 하는 것은 원격수단으로 할 수 없다.
- ②고객의 지시사항은 통장과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화 등을 통하여 원격으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의 서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③고객의 지시사항(고객 또는 지정대리인이 은행의 지점에서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은행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시사항의 수행에 앞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④근거계좌와 연결계좌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의 이체(연결계좌의 해지 후 이체 포함)에 관한 지시는 다음 사항에 한정된다.
 - 1.근거계좌와 연결계좌간 자금이체(연결계좌의 신규 개설을 위한 자금이체 포함) 단, 연결계좌의 자금은 현금 형태로 인출되거나 근거계좌가 아닌 타 계좌로 이체될 수 없음
 - 2.근거계좌에서 운용계좌로의 자금 이체
- ⑤운용계좌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자금 이체에 관한 지시(운용계좌로부터 제3자의 계좌, 근거계좌, 또는 고객의 기타 계좌에 대한 송금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본 약정서 제9조에 따라 고객이 운용계좌에 대한 원격거래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정서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고객 비밀번호의 입력 절차 등 통상적인 거래절차를 거친 후에만 수행될 수 있다.

담당직원	BSM	BM

기타 003-1 (2008.4.30)

제4조 은행 지점이 아닌 장소에서의 지시에 관한 요건

- ① 고객은 은행의 지점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의 지시사항을 확인하는 은행의 업무를 돋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1. 고객은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의 지시사항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신전화 연락처를 사전에 은행에게 통지한다.
 2.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은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이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전달함에 있어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개인 정보 및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거래를 지시하는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의 전화는 통화 내용이 녹음되는 전화 회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팩시밀리에 의한 지시의 경우,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은 <별첨1>의 “원격거래지시서”를 은행이 지정한 팩시밀리번호로 송부하여야한다.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은 원격거래 지시서를 송부한 후, 지체 없이 즉시 은행에 전화하여 원격거래 지시서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신규 개설 요청된 연결계좌의 금융상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약관의 교부 및 설명 등이 필요한 상품인 경우, 은행이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에게 해당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약관의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을 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관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지시사항의 확인 · 통지 및 지시이행시기

- ① 은행이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수령한 후, 은행은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에게 녹음이 되는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본 약정서에 따라 고객에 의하여 지정된 전화번호로 회신 전화(Happy-Call)를 함으로써 그 지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단, 고객이 2인 이상의 은행직원의 면전에서 <별첨1> 원격거래지시서를 작성하였거나, 2인 이상의 은행직원이 동행하여 고객으로부터 직접 <별첨1> 원격거래지시서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회신전화(Happy-call)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은행은 해당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 ③ 은행이 회신 전화를 하였으나 해당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은행이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이 거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은행에 전화를 하는 경우 은행은 동 전화로 회신 전화(Happy-Call)에 갈음하여 지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은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이 거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에 거는 전화의 내용이 녹음되는 것에 동의한다.
- ④ 다만,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이 응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처리 시한이 임박하는 등 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긴박한 상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은 본점 세일즈부서장과 오퍼레이션부서장의 공동승인을 얻은 후 해당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 ⑤ 은행은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후 지체없이 이행된 지시사항에 관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함과 아울러 <별첨2>의 “원격거래확인서”를 우편송부, 팩시밀리 전송, 또는 대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에게 교부한다.
- ⑥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은 동 확인서를 수령하면 확인서 내용이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이 전달한 지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고객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한 “원격거래확인서” 부분을 팩시밀리, 우편 또는 대면의 방법으로 은행에 반송하여 “원격거래확인서”的 내용과 지시사항의 일치를 통지한다 원격거래확인서에 기재된 은행의 이행과 고객의 지시사항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은 원격거래확인서를 송달받은 후 2영업일 내에 배달내용증명우편, 팩시밀리 또는 대면의 방법으로 은행에게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의 지시와 은행의 이행에 불일치가 있음을 통지하고 원격거래확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불일치의 통지를 팩시밀리를 통하여 한 경우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은 전화로 은행의 팩시밀리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이 “원격거래확인서”를 송달받은 후 2영업일 내에 위의 불일치 통지를 발송하거나 대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이 확인서의 내용과 지시사항의 일치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⑦ 은행은 원칙적으로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의 거래 지시수령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고객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전산에 장애가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2영업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편송부, 팩시밀리 전송의 방법으로 지시사항의 이행이 지체된다는 통지를 발송하거나 전화 또는 대면으로 지체사실을 알려야 한다. 은행이 거래 지시수령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지체의 통지를 발송하거나 지체사실을 알린 경우 은행은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의 지시사항을 수령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비밀번호관리

- ① 고객은 본 약정서에 따라 부여된 근거계좌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근거계좌 및 연결계좌와 관련된 거래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② 고객은 근거계좌 및 연결계좌와 관련된 거래는 인터넷이나 폰뱅킹, ATM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해당 지점을 제외한 은행의 타 지점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지한다.

제7조 통장의 관리 등

- ① 근거계좌 및 연결계좌는 무통장 방식의 계좌를 개설한다. 단, 근거 계좌를 통해 통장 방식의 연결 계좌(펀드계좌 등)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격거래서비스의 종료시까지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기존에 통장 방식으로 이미 개설된 계좌(운용계좌)를 연결계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 발행된 통장을 회수하여 은행이 보관하도록 한다.
- ②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은 은행에 대하여 거래내역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대리인의 지정

- ①고객이 본 약정서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다만, 은행의 임직원은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없음), 지정대리인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 만기일까지 본인의 명시적인 지정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계속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나아가, 고객은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1. 은행은 지정대리인이 지시하는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 그 목적을 파악하거나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지시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2.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대리인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이 내부통제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고객은 지정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은행이 수행한 업무처리의 법적효력에 기속되며, 은행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지정대리인에 대하여 본 약정에 따라 수행한 은행의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③은행은 지정대리인으로부터 지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고객이 은행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정대리인 수권을 철회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본 약정서 제5조에 따라 지정대리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 ④지정대리인은 본 약정서에 의한 고객의 은행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며, 은행이 고객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될 수 없다.
- 1.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지정전화 연락처, 팩시밀리 번호 등의 변경
 - 2.원격거래에 의한 고객의 실명확인 및 실명확인 절차를 요하는 계좌의 개설
 - 3.은행에 등록된 고객 계좌 명의인의 추가,변경,삭제
 - 4.본 약정의 변경 및 해지
 - 5.은행과 고객 사이의 분쟁 및 그 해결에 관한 사항
 - 6.지정대리인의 지정, 지정철회 등 대리권의 부여 및 철회에 관한 사항
 - 7.지정대리인에게 부여된 권한의 재위임
- ⑤고객은 지정 대리인의 권한 및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의 지정 대리인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1.필수서류:지정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및 사용인감
 - 2.은행 요청시 제출할 서류:본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9조 운용계좌에 대한 원격거래

고객이 특정한 운용계좌에 대해서 은행에 원격거래서비스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고객은 특정된 운용계좌에 대해 원격거래 지시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고객은<별첨3>의 “원격거래계좌 등록/해제 신청서”를 통해서 원격거래를 하고자 하는 운용계좌를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된 운용계좌의 통장을 은행에서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정된 운용계좌와 관련되어 발급된 ATM 카드가 있는 경우 카드해지신청서를 통하여 ATM 카드를 해지하여야 한다. 특정된 운용계좌에 대한 원격거래 지시와 관련하여 비밀번호 미부여, 통장관리,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의 지시 요건 확인 등 연결계좌의 원격거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 고객의 통지 의무

고객은 본 약정서에 기재된 회신전화 연락처, 팩시밀리 번호 기타 고객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고객의 인터넷 뱅킹 등 해지 의무

고객이 기존에 은행의 폰뱅킹 또는(및)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본 거래 약정서를 체결하기 전 해지신청서를 통하여 폰뱅킹 또는 (및)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본 약정서에 따라 은행이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의 지시사항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객이 제10조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수수료

고객은 본 약정서에 따른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14조 본 약정의 해지

본 약정의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본 약정서의 적용을 받는 연결계좌에 대해서 관련법률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른 실명확인절차를 거치고 근거계좌 및 연결계좌에 대해 비밀번호 지정, 변경 또는 계좌해지신청 등 은행이 요구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약정서의 적용범위

본 약정서는 은행의 해당지점과 거래하는 프리미어 고객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은행의 타 영업점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각 예금별 개별약관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에 따른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고객 또는 은행 영업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고객 지정사항

지정 전화번호 (휴대폰, 집, 회사 등)	지정 팩시밀리번호	지정 이메일	회신받을 주소	사전 지정 근거계좌 번호	
				예금종류	계좌번호

● 대리인 지정사항

- 지정대리인 이름:
- 지정대리인 실명확인번호:

(실명확인증표 및 본인과의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필요)

사용인감	본인과의 관계	지정 전화번호 (휴대폰, 집, 회사 등)	지정 팩시밀리번호	지정 이메일	대리인 주소

● 은행 지정사항

지점명	지정 전화번호	지정 팩시밀리번호	지점 주소

본인은 본 약정서에 정한 원격거래 서비스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계좌의 사용에 수반되는 위험(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자격 도용 또는 기망에 의한 거래지시, 본인 확인 절차상 문제발생으로 거래 지시가 처리되지 않거나 자연 처리되는 경우 등)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본 약정서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법적 효력 및 효과에 기속됨을 인정하며, 은행이 고객(또는 지정대리인) 서명의 진위 확인에 관하여 유탄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 없다고 여기는 등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는 한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다만, 무단 거래 등 사고의 발생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부담함)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지정대리인과 은행 간의 모든 전화통화(본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지시사항 및 확인사항에 국한하지 않음)를 은행이 녹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직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아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20 년 월 일

본인 _____ ⑤ 또는 서명
(향후 거래지시 시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

실명확인번호 _____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지점		담당	성명: _____	⑤ 또는 서명
본인 자서확인					

원격거래 지시서(서면지시용- FAX,우편,대면)

HSBC 은행 _____ 지점 앞 년 월 일

본인은 귀행과 약정한 “원격거래 서비스를 위한 약정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원격거래서비스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확인 사항

담당 직원 이름			거래 처리후 회신방법	팩스,우편,기타()
회신 받으실 연락처	전화번호 (필수기재사항)			
	팩스번호, 우편			
	기타 ()			
기타 요청 사항				

● 거래 지시 사항

출금,해지/ 환매	신청구분(출금,해지/ 전액,부분환매)	예금 종류/ 투자상품명	계좌 번호	금 액
예금입금/ 펀드추가	신청구분 (예금입금/추가매입)	예금 종류/ 투자상품명	계좌 번호	금 액
계좌신규	신청구분 (예금 / 펀드)	예금종류/ 투자상품명	가입기간	기 타 (과세, 만기지시 등)
기타 의견 (서술형 기재) :				

* 본 지시서를 은행에 송부 후 반드시 해당지점에 수령여부를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투자와 관련하여 HSBC은행으로부터 투자 권고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본 투자가 상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읽고 숙지한 후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위험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지정대리인) :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담당직원	BSM	BM

원격거래 확인서

고객님 귀하

HSBC은행은 _____ 고객님과 약정한 “원격거래 서비스를 위한 약정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시하신 거래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점명 : _____ 담당자 : _____ 서명 _____

거래지시일자	년	월	일	거래완료일자	년	월	일
--------	---	---	---	--------	---	---	---

거래 완료 사항

출금, 해지/ 환매	신청구분(출금, 해지/ 전액, 부분환매)	예금 종류/ 투자상품명	계좌번호	금액
예금입금/ 펀드추가	신청구분 (예금입금/추가매입)	예금 종류/ 투자상품명	계좌번호	금액
계좌신규				
예금종류/투자상품명	계좌번호	가입기간	기타 (과세, 만기지시 등)	금액

HSBC은행 _____ 지점 귀중

본인은 HSBC은행과 체결한 “원격거래 서비스를 위한 약정서”에 의거 본인이 지시한 거래내용과 위 거래완료 사항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_____ 서명 _____

* “원격거래확인서”를 수령후 2영업일 내에 고객님의 지시와 은행의 이행에 불일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신 경우 은행은 고객님께서 확인서의 내용과 지시사항의 일치를 확인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일치 내역	
--------	--

원격거래계좌 등록/해제 신청서 (등록□ 해제□ 변경□)

본인은 HSBC은행과 체결한 “원격거래서비스를 위한 약정서”에 의거 아래의 본인 명의 운용계좌에 대해 원격 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원격거래계좌 등록/해제를 신청합니다.

- 원격거래 등록/해제 계좌 명세 -

구분(택1)	예금종류	계좌번호	비고
(등록·해지)			

● 운용(일반)계좌 원격계좌 등록시 유의사항

1. 본인은 상기에 신청된 본인명의 운용계좌의 통장보관을 은행에 위임합니다.
 2. 원격거래 등록된 운용계좌에 대한 본인(또는 지정대리인)의 거래지시 확인 등을 포함한 제반 관리 절차는 “원격거래 서비스를 위한 약정서”의 연결계좌의 원격거래에 관한 약정 내용이 준용됨을 확인합니다.

※ 원격거래계좌 등록/해제는 반드시 해당 직원과의 본인 확인 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ପ୍ରକାଶକ

본인 :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담당직원	BSM	BM